

대구광역시달서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등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996. 5. 7. (화)

내 무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1996. 5. 1

나.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기획감사실장)

다. 회부일자 : 1996. 5. 1

라. 상정 및 의결

- 제46회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임시회)
 - 제1차 내무위원회 상정 : 1996. 5. 4
 - 제1차 내무위원회 의결 : 1996. 5. 4

2. 제안설명요지(설명자 :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가. 개정사유

-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전문개정 1996. 3. 4 조례 제375호)가 개정됨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서구 조례중 이와 관련되는 규정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 조례 정비에 효율성을 기하고 원활한 행정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나. 관련근거

-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전문개정 1996. 3. 4 조례 제375호)

다. 주요골자

대구광역시달서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 등 9개 조례중 직제개편과 관련이 있는 다음 조례를 일괄개정

- 1) 대구광역시달서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 제2조 제3항중 실·과장 을 실장·담당관·과장으로
- 2) 대구광역시달서구사무위임조례 제2조 [별표2]중 세무과를 징수과로, 가정복지과를 사회복지과로, 지역경제과를 경제진흥과로
- 3)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 제5조중 기획계장을 재정투자계장으로
- 4) 대구광역시달서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 제7조 제2항중 체육청소년계장을 생활체육계장으로
- 5) 대구광역시달서구물품관리조례제30조중 재무과장을 총무과장으로
- 6) 대구광역시달서구공인조례중 제2조 제5항 [별표4]의 도시개발전용을 도시관리전용으로, 지역교통전용을 교통관리전용으로, 제6조 제1항·제2항, 제7조, 제8조, 제11조 제1항·제2항 및 제12조중 시민과장을 각각 민원봉사과장으로, 제6조 제

2항 [별지 제1호 서식]과 제12조 [별지 제6호 서식]상의 시민과장을 민원봉사과 장으로

- 7) 대구광역시달서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제4조 제1항중 사회과장을 방문복지과장으로, 사회복지계장을 방문복지1계장으로
- 8) 대구광역시달서구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중 제3조 1항 [별지 제1호 서식], 제4조 제1항 [별지 제4호 서식], 제5조 제1항 [별지 제5호 서식]과 제2호 [별지 제6호 서식], 제7조 [별지 제9호 서식]의 후면 처리부서란의 지역경제과를 경제진흥과로
- 9) 대구광역시달서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환에관한조례 제10조 제4항 중 지역경제과장을 경제진흥과장으로, 지역경제계장을 경제진흥계장으로 함.

3. 검토의견(전문위원 황정근)

대구광역시달서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등중 개정조례(안) 9건은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조례 제1375호, '96. 3. 4)가 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되는 달서구 조례의 규정을 일괄개정함으로써 조례정비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기하고 개별조례정비의 번잡함과 행정낭비요소를 배제함이며, 특히 이번에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조례등중 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일부 개정방식으로 흡수개정방식과 증보개정방식이 있는 바, 이는 조례의 입법형식상 일부개정조례안의 제명의 특례로서 어떤 공통의 동기 또는 인과관계로 인하여 2이상의 조례의 일부를 동시에 개정할 필요가 있을 때 취하는 것으로, 동시·병렬적으로 개정하는 조례의 수가 상당다수(3이상) 일 때에는 제명중에 개정되는 조례의 제명을 일일이 제시하지 아니하고 “○○조례등중 개정조례”라고 표기함으로써 개별조례의 흡수개정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 5. 토 론 : 없음
- 6. 심사결과 : 원안가결(반대없음)

대구광역시달서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등중개정조례 (안)

의안 번호	96-16
----------	-------

제출년월일 : '96. 5.

제 출 자 : 달 서 구 청 장
(기획감사실)

1. 개정이유

-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 (조례 375호, '96. 3. 4)가 개정됨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서구 조례중 이와 관련되는 규정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 조례 정비에 효율성을 기하고 원활한 행정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근거법령

-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 (조례 제375호, '96. 3. 4)

3. 주요골자

- 대구광역시달서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등 9개 조례중 직제개편과 관련이 있는 조례를 일괄 정비
 - 실·과장 → 실장·담당관·과장
 - 재무과장 → 총무과장
 - 시민과장 → 민원봉사과장
 - 가정복지과 → 사회복지과

- 사회과장 → 방문복지과장
- 지역경제과 → 경제진흥과

4. 개정조례 (안) : 따로붙임.

5.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대구광역시달서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등중개정조례 (안)

대구광역시달서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등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구광역시달서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 제2조제3항중 “실·과장”을 “실장·담당관·과장”으로 한다.

대구광역시달서구사무위임조례 (별표2) 동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항의 소관부서란중 “세무과”를 “징수과”로 하고, “가정복지과”를 “사회복지과”로 하며, “지역경제과”를 “경제진흥과”로 한다.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 제5조중 “기획계장”을 “재정투자계장”으로 한다.

대구광역시달서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 제7조제2항중 “체육청소년계장”을 “생활체육계장”으로 한다.

대구광역시달서구물품관리조례 제30조중 “재무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

대구광역시달서구공인조례 제6조제1항·제2항, 제7조, 제8조, 제11조제1항·제2항 및

제12조중 “시민과장”을 각각 “민원봉사과장”으로 한다.

[별표 4] 인증기 사용부서란중 “도시개발전용”을 “도시관리전용”으로 하고, “지역교통전용”을 “교통관리전용”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공인신조개각신청서 및 [별지 제6호서식] 공인사고보고서중 “시민과장”을 “민원봉사과장”으로 한다.

대구광역시달서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제4조제1항중 “사회과장”을 “방문복지과장”으로 하고, “사회복지계장”을 “방문복지1계장”으로 한다.

대구광역시달서구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 [별지 제1호서식] 규모이하 제분업신고서, [별지 제4호서식] 규모이하 제분업(양도·임대·변경)신고서, [별지 제5호서식] 규모이하제분업 폐지신고서, [별지 제6호서식] 규모이하제분업 휴업신고서, [별지 제9호서식] 규모이하제분업 신고필증 재교부신청서의 후면 처리부서란중 “지역경제과”를 각각 “경제진흥과”로 한다.

대구광역시달서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환에관한조례 제10조제4항중 “지역경제과장”을 “경제진흥과장”으로 하고, “지역경제계장”을 “경제진흥계장”으로 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3월 4일부터 적용한다.
- ② (경과조치) 종전 대구광역시달서구공인조례 제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기에 부착하여 날인하는 공인 [별표 4]중 도시개발전용, 지역교통전용의 개정규정은 199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대구광역시달서구구조조정위원회조례] 제2조(구성) ①~② (생략) ③당연직위원은 국장 및 실·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p>		<p>[대구광역시달서구구조조정위원회조례] 제2조(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 ③.....실장·담당관·과장</p>		
<p>[대구광역시달서구사무위임조례] [별표 2] 동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항</p>		<p>[대구광역시달서구사무위임조례] [별표 2] 동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항</p>		
소관부서	일련번호	위임사무명	근거법령	비고
세무과	(중간생략)			
가정복지과	(중간생략)			
지역경제과	(중간생략)			
소관부서	일련번호	위임사무명	근거법령	비고
징수과	(현행과 같음)			
사회복지과	(현행과 같음)			
경제진흥과	(현행과 같음)			
<p>[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제5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기획계장으로 한다.</p>		<p>[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제5조(간사)재정투자계장...</p>		

현행	개정안
<p>[대구광역시달서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p> <p>제7조(간사등) ① (생략)</p> <p>② 간사는 총무과장이 되며, 서기는 <u>체육청소년계장</u>으로 한다.</p> <p>③ ~ ④ (생략)</p>	<p>[대구광역시달서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p> <p>제7조(간사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u>생활체육계장</u>.....</p> <p>③ ~ ④ (현행과 같음)</p>
<p>[대구광역시물품관리조례]</p> <p>제30조(물품출납사무의 사고보고) 물품출납원은 그 소관물품을 망실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기재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u>재무과장</u>을 경유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p>	<p>[대구광역시물품관리조례]</p> <p>제30조(물품출납사무의 사고보고).....</p> <p>.....<u>총무과장</u>.....</p>
<p>[대구광역시달서구공인조례]</p> <p>제6조(공인의 신조·개각) ① 공인의 신조·개각은 <u>시민과장</u>이 이를 행하여 교부한다.</p> <p>② 사업소장, 부속기관의 장 또는 보조기관이나 회계관계공무원이 공인을 신조 또는 개각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u>시민과장</u>에게 신청하여야 한다.</p> <p>다만, 사업소장의 보조기관으로서 공인을 가지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에게 그 사유를 상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p>	<p>[대구광역시달서구공인조례]</p> <p>제6조(공인의 신조·개각) ①.....<u>민원봉사과장</u>.....</p> <p>②<u>민원봉사과장</u>.....</p>

현행	개정안
<p>제7조(공인대장) <u>시민과장</u>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공인대장을 작성하여 공인의 신조·개각 또는 폐기할 때마다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게 하여야 한다.</p>	<p>제7조(공인대장) <u>민원봉사과장</u>.....</p> <p>.....</p> <p>.....</p> <p>.....</p>
<p>제8조(인영의 보존) <u>시민과장</u>은 매년 2월 1일 현재의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3호서식]의 인영부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한다.</p>	<p>제8조(인영의 보존) <u>민원봉사과장</u>.....</p> <p>.....</p> <p>.....</p> <p>.....</p>
<p>제11조(공인의 폐기) ① 공인의 개각, 기관의 폐지등으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그 공인을 <u>시민과장</u>에게 지체없이 인계하여야 한다.</p> <p>② <u>시민과장</u>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받은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5호서식]의 폐인대장에 등재하고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p> <p>③ (생략)</p>	<p>제11조(공인의 폐기) ①</p> <p>.....<u>민원봉사과장</u>.....</p> <p>.....</p> <p>② <u>민원봉사과장</u>.....</p> <p>.....</p> <p>.....</p> <p>③ (현행과 같음)</p>
<p>제12조(공인의 사고보고 등) 공인관수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또는 변조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공인사고보고서를 <u>시민과장</u>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12조(공인의 사고보고 등)</p> <p>.....</p> <p>.....</p> <p>.....</p> <p>.....<u>민원봉사과장</u>.....</p>

현	행	개	정	안								
<p>[대구광역시달서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 치및운용조례]</p> <p>제4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 의료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 관은 구의 <u>사회과장</u>으로, 기금출납원은 <u>사회복지계장</u>으로 한다.</p> <p>② (생략)</p> <p>[대구광역시달서구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 등에관한조례]</p> <p>[별지 제1호·제4호·제5호·제6호·제9 호서식]</p> <p style="text-align: center;">(후 면) (중 간 생략)</p>		<p>[대구광역시달서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 치및운용조례]</p> <p>제4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p> <p>.....<u>방문복지과장</u>.....<u>방문복지1계장</u>.....</p> <p>② (현행과 같음)</p> <p>[대구광역시달서구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 등에관한조례]</p> <p>[별지 제1호·제4호·제5호·제6호·제9 호서식]</p> <p style="text-align: center;">(후 면) (현행과 같음)</p>										
<p>이 신고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d style="width: 15%;">신 고 인</td> <td>처리부서 : 구청 <u>지역경제과</u></td> </tr> <tr>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이하생략)</td> </tr> </table>		신 고 인	처리부서 : 구청 <u>지역경제과</u>		(이하생략)	<p>이 신고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d style="width: 15%;">신 고 인</td> <td>처리부서 : 구청 <u>경제진흥과</u></td> </tr> <tr>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현행과 같음)</td> </tr> </table>			신 고 인	처리부서 : 구청 <u>경제진흥과</u>		(현행과 같음)
신 고 인	처리부서 : 구청 <u>지역경제과</u>											
	(이하생략)											
신 고 인	처리부서 : 구청 <u>경제진흥과</u>											
	(현행과 같음)											
<p>[대구광역시달서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 차료상환에관한조례]</p> <p>제10조(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p> <p>①~③ (생략)</p> <p>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 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u>지역 경제과장</u>, 서기는 <u>지역경제계장</u>이 된 다.</p>		<p>[대구광역시달서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 차료상환에관한조례]</p> <p>제10조(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p> <p>①~③ (현행과 같음)</p> <p>④</p> <p>.....<u>경제 진흥과장</u>,<u>경제진흥계장</u>...</p> <p>.....</p>										